

日本漁港의 維持管理 (11)

國有財產의 管理와 處分

1. 국유재산의 범위와 관리, 처분의 개요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국유재산법을 근거로 하여 실행되나 국유재산이라 함은 그 종류, 구분이 매우 복잡다단 하다.

어항의 유지관리의 일환으로 실행되는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은 그 중에서 한정된 범위의 것이지만 그 사무의 집행에 있어서는 국유재산의 전반에 관한 개요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먼저 국유재산이란 국유재산법 2조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국유가 된 재산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혹은 기부에 의하여 국유가 된 재산(부동산, 선박, 기타의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그 분류는 크게 나누어 행정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되며 이는 다시 다음과 같이 나누어져 있다. (어항법 제3조)

○ 행정재산

- 공용재산 : 국가의 사무·사업 또는 직원의 거주 용으로 제공하는 것.

- 공공용재산 : 국가에서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하는 것.

- 기업용재산 : 국가의 기업 또는 그 기업의 직원 거주용으로 제공하는 것.

○ 보통재산 : 행정재산 이외의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국유재산법을
근거로 하여
실행되나 국유재산이라
함은 그 종류,
구분이

매우 복잡다단 하다.

어항의 유지관리의
일환으로 실행되는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은

그 중에서 한정된
범위의 것이지만 그
사무의 집행에 있어서는
국유재산의 전반에
관한 개요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일체의 재산.

이들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의 기본은 행정재산에 있어서는 그것을 대부, 교환, 매각, 양여, 출자의 목적으로 또는 사권의 설정을 할 수 없으나 그 용도 또는 목적을 방해하지 않는 한 도내에서 그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동법 제18조) 그 관리는 각 성(省), 청(廳)의 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동법 제5조)

한편 보통재산에 있어서는 대부, 교환, 매각, 양여, 사권의 설정이 가능하여 (동법 제20조) 그 관리처분은 원칙적으로 대장대신이 행하도록 되어 있다. (동법 제6조)

2. 농림수산성소관의 국유재산

어항구역 및 어항의 구역에 접하는 해안보전구역에서 어항 관리자의 장이 관리하는 구역 (이하 이를 「어항구역」 등이라 한다) 내에도 각종 국유재산이 있으나 그 중 농림수산성의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편의상

분류하면 다음의 4종류로 나눌 수 있다.

① 국가가 어항수축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공작물(어항수축재산 등)

② 공공공지(국유해빈지 등)

③ 해안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안관리자가 조성한 해안보전 시설.

④ 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토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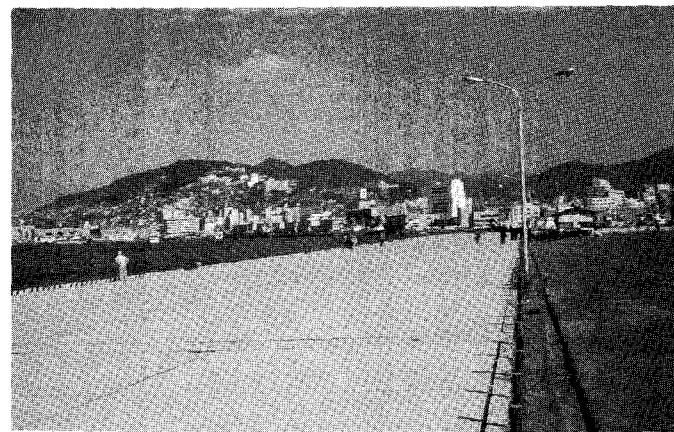
이들은 주로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으로 보통재산 또는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 등은 예외(어항수축재산의 일부)로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

3. 국가가 어항수축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공작물 등의 관리 및 처분

가. 어항수축재산 등이란

국가가 시행하는 어항수축사업(현재는 북해도에 있어서의 제3종 및 제4종어항에 한정되어 있다)에 의하여 생긴 토지 또는 공작물로서 국유재산법 제2조의 국유재산인 것을 「어항수축재산」이라고 한다. 어항수축재산은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이 주체이나 예외적으로 공용재산(현장의 사무소, 관사, 야드장 등의 용지) 또는 보통재산이 포함된다.

이들 어항수축재산외에 어항수축재산은 아니나 국가가 어항수축사업 이외의 사업에 의하여 조성한 시설, 예를들면 운수성이 직할사업으로 조성한 항만시설, 야드장으로서 당해 항만이 어항으로 지정 변경되어 농림수산성 소관으로 변경



된 것에 대하여도 어항수축재산에 준하여 관리,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나. 관리처분의 개요

어항수축재산 등은 농림수산대신이 관리 또는 처분하도록 되어 있어(어항법 제24조의5 제1항) 국유재산법 제5조에서 소관하는 각 성, 청의 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재산 외에 특례로서 동법 제6조에서 대장대신이 관리,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보통재산에 대하여도 농림수산대신이 관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어항법 제24조의5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조)

이들의 어항수축재산 등의 관리,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어항시설재산이라 한다)은 어항관리자에게 관리를 위탁하여 어항관리자가 어항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하고(어항법 제24조의5 제2항) 보통재산 또는 공용재산은 농림수산대신 또는 그 재산부국장(財產

이들 어항수축재산외에
어항수축재산은
아니나 국가가
어항수축사업 이외의
사업에
의하여 조성한 시설,
예를들면 운수성이
직할사업으로 조성한
항만시설,
야드장으로서 당해
항만이 어항으로
지정 변경되어
농림수산성 소관으로
변경된 것에 대하여도
어항수축재산에
준하여 관리,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部局長)이 관리, 처분을 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 근거는 어항법, 동시행령 외에 국유재산법, 어항수축재 산취급규정, 농림수산성소관 국유재산취급규칙 등에 의하고 있다.

다. 공공용재산은 어항관리 자에게 관리위탁

농림수산대신은 어항수축재 산으로 국유재산법 제3조제2항 제2조의 공용재산의 관리를 어 항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것을 「어항시설재산」이라 일컬어 그 관리(유지, 보존 및 운용을 말하며 이들을 위한 개축, 증축을 포함함)를 어항관리자에게 위탁하는데는 양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정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다. (어항법시행령 제7조)

또한 전술한 어항수축재산에 준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도 같은 조치가 가능하다.

1) 관리를 위탁할 어항시설 재산의 소재, 종류, 구조 및 규모.

2) 이관 년월일

3) 관리의 방법

4) 위탁의 조건

5) 기타 필요한 사항

관리수탁자의 관리책임은 2)의 年月日이후 발생하고 그 인계는 농림수산성의 직원과 관리수탁자가 실지(實地)에 입회하여 하도록 되어 있다. (어항법시행령 제8조, 제9조)

관리수탁자는 수탁에 관계되는 어항시설재산은 그 용도, 목적에 부응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로 관리하고 재해

더욱이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의무를 지는 반면 그 관리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어항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징수하는 수탁어항시설의 이용의 댓가)은 관리수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어항법 시행령 제14조)

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항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더욱이 관리수탁자는 수탁재 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 담하는 의무를 지는 반면 그 관리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어 항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징수하는 수탁어항시설의 이용의 댓 가)은 관리수탁자에게 귀속하 는 것으로 되어 있다. (어항법 시행령 제14조)

(참고)

어항시설재산관리 위탁 협정서

농림수산성(이하「갑」이라 한다)과 북해도(이하「을」이라 한다)는 어항법 제24조의5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한 국영어항수축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어항의 어항시설 재산의 관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을 체결한다.

(관리의 위탁)

제1조 갑은 별지 제1의 재산조 서 및 제2의 재산도면에 기재된 어항시설재산(이하「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유지 보존 및 운용과 이를 위한 개축, 증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을에게 위탁한다.

(책임의 이전시기)

제2조 재산의 이관은 ○년○월○일로 하고 을은 동일 이후의 재산의 관리의 의무를 진다.

(관리상의 의무)

제3조 을은 어항법시행령 제10 내지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의 방법)

제4조 재산관리의 방법에 대하여는 별지 제3의 유지관리계획서 및 북해도어항관리규정(북해도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위탁의 조건)

제5조 읊은 재산을 당해 재산의 본래의 용도 또는 목적에 따라 이용하여야 한다.

제6조 읊은 재산을 용도 또는 목적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타의 용도 또는 목적에 사용, 수익하고자 할때는 사전에 다음에 계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타인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경우에는 당해 사용 또는 수익에 관계되는 계약서안을 첨부한 것)를 갑에게 제출,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당해 어항시설재산의 명칭 및 범위

(2)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 및 방법

(3)타인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경우에는 그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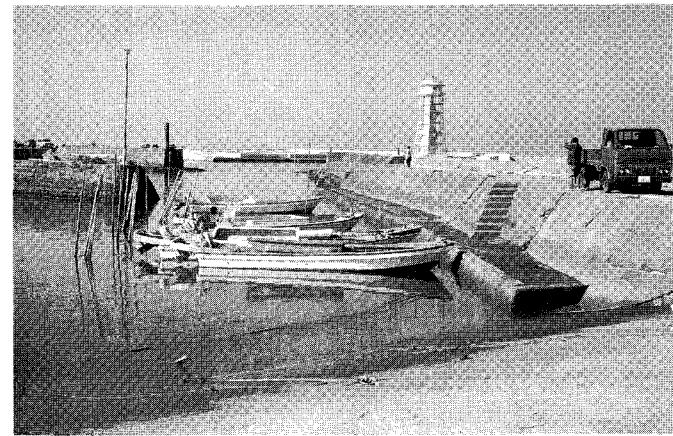
(4)사용 또는 수익의 기간

(5)타인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경우에는 당해 사용 또는 수익의 조건

(6)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이 공작물의 설치를 수반할 경우에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목적, 설치장소,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 및 완료예정연월일 및 당해 공작물의 설계개요(설치장소를 명확히 한도면 및 설계도 첨부)

(7)사용 또는 수익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예정수입

(8)기타 필요한 사항



(협정의 해제)

제7조 갑은 재산의 이용이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공공의 사용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이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제8조 다음의 경우에는 이 협정은 해제된 것으로 한다.

(1)천재, 기타의 사고에 의하여 재산이 멸실된 때.

(2)갑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 그 뜻을 을에게 통지한 때.

(3)갑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관 또는 소속을 변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 그 뜻을 을에게 통지한 때.

(의의(疑議)의 결정)

제9조 이 협정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의의가 발생했을 때는 그때마다 협의하는 것으로 한다.

이상의 협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정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을 보관한다.

년 월 일

관리위탁자 : 농림수산성

협정담당자 북해도

개발국장 성명 ①

관리수탁자 : 북해도

협정담당자 직 ①

성명 ①

별지 제1. 재산조서...어항수축재산대장의 사본으로 한다.

별지 제2. 재산도면...어항수축재산에 첨부된 전체 이용계획 평면도, 완성된 평면도, 구적표(求積表), 완성단면도, 어항구역도로 한다.

별지 제3. 유지관리계획서

라. 어항수축재산 등을 관리하는 재산부국장(財產部局長)

어항수축재산 등의 관리를 담당하는 재산부국장은 국가가 시행하는 어항수축사업에 의하여 생긴 재산에 있어서는 북해도 개발국장, 어항수축사업이 의의 사업으로 국가가 조성한 재산에 있어서도 도도부현지사이다. ❶